

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계약서(1차)

본 변경계약서(이하 “**본 변경계약(서)**”)는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2024년 8월 27일(이하 “**체결일**”) 체결된다.

1. 주식회사 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이하 “**위탁자**”)
2.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(이하 “**자산관리자**”)

전 문

1. 본 변경계약의 당사자들은, 위탁자가 소유하거나 소유할 예정인 대상자산의 투자 및 운용 업무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하고, 자산관리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9년 7월 16일 자산관리 위탁계약(서){이하 “**최초 계약(서)**”, 본 변경계약과 총칭하여 “**본 계약**”}을 체결한 바 있다.
2. 당사자들은 본 계약상 자산관리보수 조건을 본 변경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고자 한다.
3.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다 음

제 1 조 정 의

본 변경계약에서 달리 정의되어 있지 않은 한, 최초 계약에서 정의된 용어들은 본 변경계약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.

제 2 조 최초 계약의 변경

최초 계약 별첨 제1조 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변경 전	변경 후
1. “ 처분가액 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	1. “ 처분가액 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

기재와 같다. (중략) 나. 위탁자의 대상자산 중 부동산관련 증권 매각 시 매각금액(만일 해당 증권의 기초자산이 처분되어 해당 증권의 원본이 상환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매각에 따른 이익배당금인 청산소득 및 원본액(원금)을 의미한다)	기재와 같다. (중략) 나. 위탁자의 대상자산 중 부동산관련 증권 매각 시 매각금액(만일 해당 증권의 <u>원본이 (중도)</u>상환되는 경우에는 <u>이익배당금</u> 및 원본액(원금)을 의미한다)
---	--

제 3 조 효력

- (1) 본 변경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(2)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변경계약 체결일 이전에 중도상환된 부동산관련 증권에 대해서도 본 계약에 따른 매각기본보수 및 매각성과보수 조항을 적용하여 지급하며, 이 경우 해당 중도상환된 부동산관련 증권의 “처분일”은 본 변경계약의 체결일로 본다.
- (3) 본 변경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약정된 사항을 제외하고, 최초 계약은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. 최초 계약의 내용이 본 변경계약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본 변경계약에 따라 변경된 취지에 따라 해석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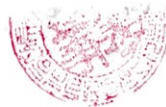
(다음 페이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하여 이하 여백)

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변경계약의 당사자들은 첫머리 기재일자에 각자 적법한 서명권자로 하여금 본 변경계약을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원본 2부를 작성하여 각자 원본을 보관하기로 한다.

위탁자 **주식회사 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**

(주 소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세우빌딩 14층(여의도동)

(대표자) 대표이사 도 병 운



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변경계약의 당사자들은 첫머리 기재일자에 각자 적법한 서명권자로 하여금 본 변경계약을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원본 2부를 작성하여 각자 원본을 보관하기로 한다.

자산관리자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

(주 소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세우빌딩 14층(여의도동)

(대표자) 리츠부문 대표 윤 정 규

